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65,617,504 | 10,968,525 |
| 일반회계 | 336,205,682 | 10,086,170 |
| 특별회계 | 29,411,822 | 882,355 |
| 기타특별회계 | 29,411,822 | 882,355 |
| 상수도사업 | 1,682,590 | 50,478 |
| 하수도사업 | 1,200,530 | 36,016 |
| 수질개선 | 5,209,722 | 156,292 |
|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| 535,424 | 16,063 |
| 의료급여기금 | 653,901 | 19,617 |
|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| 537,375 | 16,121 |
| 소득특화사업 | 5,805,662 | 174,170 |
| 농공단지조성사업 | 196,480 | 5,894 |
| 공영개발사업 | 2,348,404 | 70,452 |
|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| 11,115,596 | 333,468 |
|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| 126,138 | 3,784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418,73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2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